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4차)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월 10일

화 성 시 장

I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기간: 2025년 1월 10일 ~ 1월 31일(21일간)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아래 시행지침 참조

II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① 사업 신청서 접수 후 부서 내부 검토
 - ② (시 → 도) 경기도에 사업 신청 접수 현황 보고
 - ③ (도 → 시)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명단 통보
 - ④ (시 → 농가) 선정 알림

※ 상기 사업의 수요조사 참여 농가 우선 선정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정책과(☎031-5189-18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

I.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지원
 - * 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사업비

- 10,000천원/개소(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II. 주요내용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된 자

□ 지원 우선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농가(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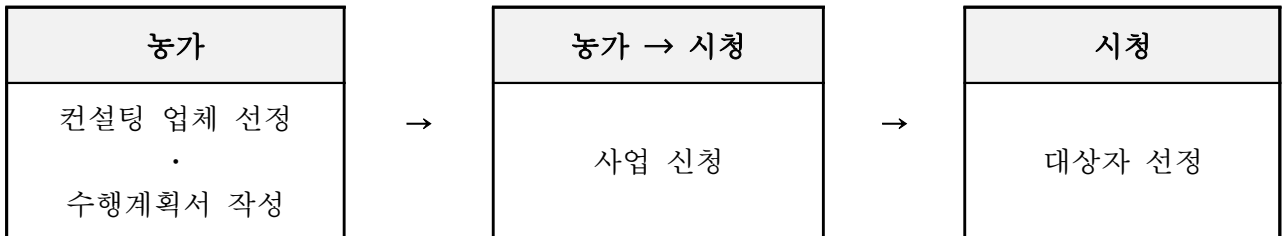
□ 지원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해당연도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 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컨설팅 지원분야

분야		컨설팅 주요내용	지원 대상자
기반 조성	시설 · 운영개선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한 시설설계, 시설구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공정개선, 안전관리, 재고관리, 각종 서류 및 절차 지원 등 컨설팅 수행	신규참여 희망 경영체
경영 역량 강화	생산관리	농가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능력 수준을 진단하여 관련 최신 기술을 보급 및 전수하는 신기술보급, 축산 사양 및 사료 관리, 종축 및 번식관리, 질병관리, 노동력 및 기계의 이용 계획 수립 컨설팅 수행	
	질병관리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따른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에 대한 컨설팅 수행	기 인증 경영체
지속 성장	판로개척 · 유통관리	시장확대, 해외수출 등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유통관리 컨설팅 수행	
	6차 산업화	생산된 축산물 또는 농장을 활용하여 상품아이템을 발굴하고 판매 및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상품개발, 가공기반 구축,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 농촌관광상품 연계 컨설팅 수행	

III.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컨설팅 업체 선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인증 컨설팅 업체와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업체 중 컨설팅 추진실적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
- 컨설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업체와 외부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외부 전문가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수행계획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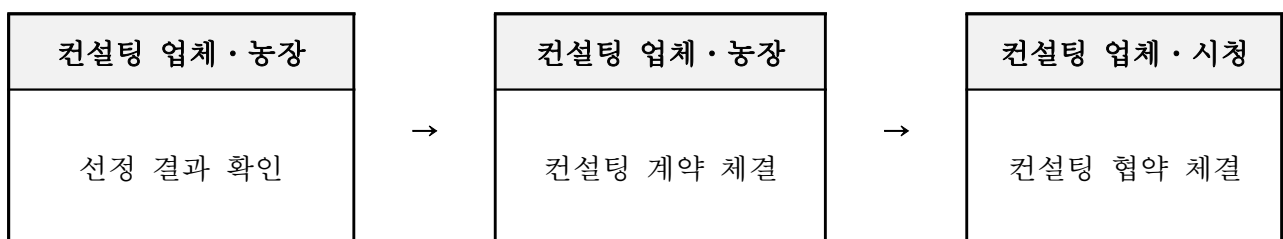
- 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 기준
 -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 권장. 단, 수요자 요구에 따라 희망 분야 컨설팅 선택 가능(컨설팅 분야 3개 이내로 설정)

- 컨설팅 분야를 고려하여 3~5개월 이내, 컨설팅 횟수를 15회 이상으로 하되, 수행계획서상 사업 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 * 컨설팅 시작일: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 컨설팅 완료일: ~ 2024. 11. 29.이전 완료 필수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 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 *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및 승인 후 활용(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사업 참여 동의서 등 제출)
 -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각 항목별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 제시
 - * 정성적 지표 1개, 정량적 지표 1개 이상 필수
-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시청에 제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 윤리강령 서약서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최근 2년 이상 작성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축산업 허가(등록)증
 - 수행계획서

IV. 계약 및 협약체결



□ 컨설팅 계약 체결(농장 & 컨설팅 업체)

- 선정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컨설팅 업체와 ‘계약서’ 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 계약서 사본을 시청에 제출 후 컨설팅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입금
- 컨설팅 자부담금을 컨설팅 업체에 우선 입금한 뒤 농장은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 보관
- * 자부담금은 사업 시작 전, 중간점검 전 50%씩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농장은 계약 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 업체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업체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 가능

□ 컨설팅 협약 체결(컨설팅 업체 & 시청)

- 선정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후 시청과 ‘동물복지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작성 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시 ‘자부담 입금확인서(농장)’, ‘컨설턴트 윤리강령서약서’ 제출

* 외부컨설턴트 컨소시엄 구성 시 ‘외부컨설턴트 사업참여 동의서’ 제출

- 협약 중지

-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컨설팅 업체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협약 중지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해당 농장에 통보(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 컨설팅 운영 부실 및 부정한 용도로 사업비 사용

V. 사업 시행

□ 컨설팅 업체 수행일지 작성

-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컨설팅 투입일수에 맞추어 컨설팅 건별 수행일지 등을 작성하여 컨설팅 수행 후 10일 이내 시청 제출
- 수행일지 작성 및 제출 시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속도로 통행요금 영수증 등) 함께 첨부
- 수행일지는 컨설팅 추진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재(면담, 인터뷰 내용 등)

□ 중간 점검

- 컨설팅 업체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간보고일(또는 계약기간 1/3 경과 시)까지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청에 제출

- 농장은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기타 컨설팅 수행결과 산출물을 확인한 후 원문에 서명
- 컨설팅 업체는 중간보고서 심사 결과 ‘정상’ 의 경우 농장을 통해 중도금 신청
 - * 농장이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 업체에 위임할 경우 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 점검개요
 - (점검방법) 농장 대표와 면담 및 중간보고서와 관련서류를 점검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중간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주 이내
 - (점검항목)
 - ①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추진의 적합성(수행일지 확인)
 - ② 수행과정의 효율성과 충실도(계약서, 자부담 입금, 중간보고서 등 확인)
 - ③ 수행목표 대비 진행상태(중간보고서 요약 및 원문 확인)
 - (심사결과 기준)
 - ① 정상: ‘적정’ 6개 이상인 경우
 - ② 보완요청: ‘미흡’ 4~5개 또는 ‘판정보류’ 4개 이상 발생 시
‘미흡’ 및 ‘판정보류’ 를 합하여 6개 이상 발생 시
 - ③ 협약취소: ‘미흡’ 6개 이상 발생 시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불량업체 신고
 -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완료 보고

- 컨설팅 업체는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와 관련서류(수행일지 등)를 시청에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요약, 완료보고서 원문, 수행일지 사본,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 단, 컨설팅 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도 제출
 - 제출기한: 수행계획서의 완료보고 기재일자(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경영체, 시청 대상 서면 제출

- 농장은 컨설팅 업체가 실시하는 사후 역량진단에 적극 협조
- 농장은 컨설팅 업체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컨설팅 업체가 시청에 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협조
- 보완이행
 -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보완’ 의 경우 1개월 이내 보완사항을 이행 후 컨설팅 업체는 농장과 보완사항을 이행 후 시청에 재보고
-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점검시기) 컨설팅업체의 완료보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점검 평가표에 따라 실시 실시
 - (협약취소)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림부에 보고
 -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후 농림부에 보고
 - (심사결과 기준)

구분	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보완 (부분수정)	55점 이상~ 60점 미만
재작성 (전면수정)	50점 이상~ 55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

구분	재점검
정상완료	60점 이상
감액	55점 이상~ 60점 미만
협약취소	50점 미만 또는 제출기한 위반 (1차 15일, 2차 30일)

- ① 정상완료: 사업비 잔금 지급
- ② 보완: 점검 결과 55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농장과 시청에 보고
- ③ 재작성: 점검결과 55점 미만일 경우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재작성 하여 농장과 시청에 보고
- ④ 감액: 재점검 결과도 50점 이상~60점 미만일 경우 감액산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회수 또는 미지급

⑤ 협약취소: 점검 및 재점검 결과 50점 미만일 경우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 농림부에 보고
- 귀책사유가 농장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 회수 후 농림부에 보고

□ 계약의 무효·해지

○ 시청은 아래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컨설팅 업체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사업완료 및 컨설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영체 또는 컨설팅 업체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간·완료 점검 및 기타 필요에 의한 수시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지자체의 수행계획서 심사, 중간·완료 점검 결과가 부적합하여 선정 취소가 된 경우 등
-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전역량진단결과 컨설팅성과 및 기대효과가 미흡한 경우(선정 취소)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청은 계약의 무효·해지가 확인된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컨설팅 업체 있는 지원자금 회수
- 귀책사유가 경영체에 있는 경우 지원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도해지 등에 따른 실비 정산 시 투입일수를 근거하여 산출하되 국고·지방비·자부담 비율대로 정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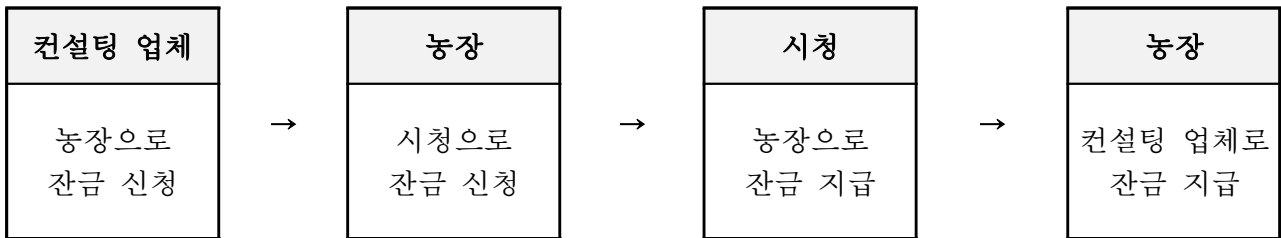
□ 계약의 변경

○ 아래의 사유에 의한 계약 변경은 중간보고 전 1회에 한하여 경영체와 컨설팅 업체 간 합의 후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에 서명날인 후 시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그 외 사유에 의해 계약변경 승인 없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및 감액 처리

-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등 변경
- 투입 인력의 구성 변경(단, 컨설턴트 변경 시 동일한 등급의 컨설턴트를 투입하여야 하며, 당초 협약금액 변경 불가)
- 컨설팅 비용 변경
- 컨설팅 업체 변경(이때 사업기간은 계약일 이내 잔여기간으로 함)
- 그 외 컨설팅 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VI. 사업비 정산



* 정산 위임 시: 컨설팅 업체 → 시청 → 컨설팅 업체 순으로 잔금 신청 지급 가능

□ 잔금 신청

- 컨설팅 업체는 완료보고서가 ‘정상완료’ 인 경우 농장을 통해 잔금 신청
- 시청으로 잔금 신청 후 지급 받은 잔금을 컨설팅 업체에 지급

VII. 사후관리

□ 현장점검

- 지자체 사업담당자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성과지표관리, 컨설팅 추진 현황 및 계약 이행 여부 등 지도·감독
- 현장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후 농림부에 보고

□ 제재 및 처벌내용

- 문제 발생 시 지자체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 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활용 가능

<컨설팅 업체>

- 결격사유가 **중대한 경우** 인증(계약)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관련 결과를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보
 -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차기 해당 사업 참여 제한하고, 농정원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관련 결과를 통보하여 농업경영컨설팅사업(농정원 일자리지원실 044-861-8774) 및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인증에 참고토록 통보

<컨설턴트>

-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 등을 하는 경우 향후 해당 사업 참여 제한

<농장>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컨설팅 업체의 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할 경우 향후 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 부당사용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 시청은 컨설팅 완료 신규 참여 농가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3년 이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정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

VIII. 환류

- 컨설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실한 농장에 대해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별표 1]

‘24년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업체 목록

연번	컨설팅업체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1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이광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41, 401호	070-4618-1840	fieman@daum.net	축 산 물 H A C C P 컨설팅업체
2	(주)한국식품컨설팅	박민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52 상가동 2층 5호(송파동 가락 삼익맨션)	02-412-5626	haccpkfc@hanmail.net	
3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다예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73, 504호	02-588-2162	kiir@kiir.or.kr	농 업 경 영 컨설팅업체
4	주식회사한국정책미디어	이준모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503호	02-782-7823	joon6778@thekpm.com	
5	(주)국제그린컴퍼니	홍민희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35, 레이크팰리스상가 A동 508호	010-6807-0188	igc0111@naver.com	
6	주식회사팜한농	김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5,6층	02-3159-5788	jisookim0624@farmhannong.com	
7	사단법인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신애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122	02-2077-2502	newma@newma.re.kr	
8	단비경영컨설팅협동조합	좌상훈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3, 1502호(중동, 해운대오션프라임)	070-8242-8524	jwa007@daum.net	
9	우리경영컨설팅(주)	손희정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북개로 50, 3층 2호	053-592-6699	kwakbj47@hanmail.net	
10	이노경영기술원(주)	김경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로 47, 3층	053-588-2191	inno2191@hanmail.net	
11	(주)산업경영연구원	조형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북개로 50, 3층 1호	053-564-6008	hyungjea2@hanmail.net	
12	해숲식품안전솔루션(주)	오용관	광주시 북구 서양로 51, 2층	070-7114-0015	kj95@hitel.net	
13	(주)우리경영기술	윤나라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07번길15, 무진회관 1층	062-955-0707	1000we@naver.com	농 업 경 영 컨설팅업체
14	(주)코업경영연구소	김성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219번길 47, 342호	070-4177-9548	coop-7@naver.com	
15	지역농업네트워킹협동조합	강혜정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6, 비동 1204호	044-414-9751	ranet@ranet.co.kr	
16	(주)에프엠코리아스	성민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A동 1609, 1610호	031-281-3970	fmkorea@hanmail.net	축 산 물 H A C C P 컨설팅업체
17	(주)정피엔씨연구소	정영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유-타워 1504, 5호)	031-704-8113	pnc8113@jpnc.co.kr	

연번	컨설팅업체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18	준컨설팅주식회사	오대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603	070-4250-9547	cmgt0318@naver.com	
19	(주)한국육류연구소	고경철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2번 안길 6-1, 2층(당동)	031-399-3219	kyungckoh@nat.e.com	
20	드림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고지인	경기도 고양시 중앙로 1568(대화동) 하성프라자 601-8호	031-912-5650	jiin211@naver.com	
21	(주)초원지역전략연구소	변지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126, 1503호(오비즈타워)	031-389-2831	byunjw0413@naver.com	농업경영컨설팅업체
22	맥스컨설팅(주)	박정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에이스 평촌타워 506호	02-3474-0906	helpme@maxconsulting.or.kr	
23	한국농업아카데미(주)	이광호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303호(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031-677-7590	khlee11849@naver.com	
24	(주)CE경영컨설팅	손윤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항로 13번길 14-16 대맥프라자 704호	032-328-9340	ygsohn57@daum.net	
25	(주)반석엘티씨	손영호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4번길 8	043-535-6426	bshac@bansuk.biz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26	주식회사거름	최병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16번길 18, 702호	043-288-3505	eco@georum.com	
27	써브스트라투스코리아(주)	이유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143, 다래빌딩 304호	041-566-5261	substratus@subkor.co.kr	농업경영컨설팅업체
28	(주)에코비즈	유찬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80, 301호(송천동 1가, 3층)	063-251-2531	gidc@kakao.com	
29	(주)두루	김귀숙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97	061-471-6714	duru2002@hanmail.net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30	나루농업컨설팅(주)	윤정숙	전남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021, 2층	062-571-9058	jujube99@naver.com	
31	사단법인한국온실작물연구소	안준상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62	061-381-2891	ict9907@naver.com	
32	정우경영컨설팅그룹(주)	이무형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21(2층)	053-652-5895	wgroup@hanmail.net	농업경영컨설팅업체
33	(주)비즈닥터컨설팅	한윤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55 현대오피스텔 604호	055-231-0555	mis9@naver.com	
34	(주)창조와혁신	이용형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서부로 2300-7	010-5170-7588	yhle@naver.com	
35	(주)팜애니웰	강종철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32, 2층	010-3699-9462	bellfe@daum.net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별표 2]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참고)

○ 컨설턴트 수당 평가기준 (신규)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15년 이상	12~15년 미만	9~12년 미만	6~9년 미만	3~6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학력 및 경력 (70)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40	40	35	30	25	20	15	10
	학력 및 자격	30	박사, 기술사, 기능장	석사,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학사, 기사		학사 미만	
			30	25	20	10			
컨설팅 실적 (30)	최근 3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30	15건 이상	12~14건	9~11건	6~8건	3~5건	1~2건	
			30	26	22	18	14	10	

※ 컨설팅 건수는 농업경영컨설팅 및 축산관련 포함하여 타 산업분야 컨설팅 실적도 인정 (최근 3년간 컨설팅실적이 없는 경우 점수 미부여)

○ 컨설턴트 수당 평가기준 (재심사)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15년 이상	12~15년 미만	9~12년 미만	6~9년 미만	3~6년 미만	1~3년 미만	1년 미만
학력 및 경력 (70)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	40	40	35	30	25	20	15	10
	학력 및 자격	30	박사, 기술사, 기능장	석사,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학사, 기사		학사 미만	
			30	25	20	10			
컨설팅 실적 (30)	최근 2년간 연평균 컨설팅 건수	20	12건 이상	9~11건	6~8건	3~5건	1~2건		
	최근 2년간 연평균 <u>동물복지컨설팅건수</u>	10	5건 이상	3~4건		1~2건			
			10	10	8		6		
가점 (최대 10점)	컨설팅관련 포상	5	·도지사상 이상						
	컨설팅교육이수 (최근2년)	3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3	3		2		1		
감점 (최대 10점)	성공사례 및 저서(최근 2년)	2	·주요 언론매체 소개, 저서, 연구논문 등						
	완료평가 계약 취소	-5/건	·계약 취소의 책임이 컨설턴트에 귀착						
	고객클레임, 불성실 컨설팅 민원	-2/건	·주관기관에서 점수						

○ 평가점수에 따른 수당 기준

점 수	40~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등급	E	D	C	B	A	S
수당(만원)	40	50	60	70	80	85

[별표 3]

감액 산출기준

순번	지 적 사 항	조치
제1호	계획대비 M/D가 부족한 경우 (투입일수 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M/D당 수임단가×1.5배를 계약금에서 감액 처리 ○ 수행계획서상에 투입하기로 정해진 투입일수(M/D)보다 실제 컨설팅 투입일수(M/D)가 적은 경우로 대부분의 경우 감액 조치 ○ 과도한 투입일수 미충족은 당초 제시된 컨설팅 목표가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수행계획서 대비 50% 미투입 일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 취소’
제2호	완료보고 재점검 결과 평가점수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당 감액비율(계약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50점 이상~51점 미만 : 50% - 평가점수 51점 이상~55점 미만 : 40% - 평가점수 55점 이상~59점 이하 : 35% ※ 2차 완료점검결과 50점 미만은 협약 취소
제3호	‘보완’조치 후 최종보고서를 30일 이내 제출 못한 경우, 지체일수(계약종료일로부터 적용)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15일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다만, 지체상금 산정시 평가점검단의 지연일정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 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5일이 초과될 경우 계약 취소 ○ 15일 이후 완료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컨설팅업체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
제4호	계약완료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1회 30일 이내) 승인 없이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계약완료일로부터 1,000분의 5의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지체일수가 7일 초과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체일수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나, 15일 유예기간 이외에 7일을 추가로 지체할 경우 계약 취소 ○ 계약완료일로부터 22일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감액으로 규정, 22일 초과 시 계약 취소
제5호	컨설팅계획서와 다른 하급컨설턴트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서상 "A"등급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B"등급 또는 "C"등급의 인력을 대체 투입하거나 대체 투입 일수가 적은 경우는 투입인력의 등급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 ○ 계약변경 없이 의도적인 하급 컨설턴트 투입은 계약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취소 가능 <p>* 컨설팅업체 인증 취소</p>

[별표 4]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외부)컨설턴트 사업참여 동의서

본인은 '○○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인증업체 '○○○○'의 외부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분야 선택>

* 본인의 컨설팅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

개별경영체		
컨설팅분야		선택(○)
기반 조성	A-① 시설/운영개선	
경영 역량 강화	A-② 질병관리	
	A-③ 생산관리	
	A-④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지속 성장	A-⑤ 6차 산업화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시장 귀하

[별표 5]

동물복지축산 컨설턴트 등록

소속(업체명)		직위(직책)		
사 진	성명		연령	세
	생년월일	19	상근/비상근	
	주소			
	E-Mail		휴대폰	

○ **학력사항**(※ 고등학교이상 학력 작성) *최종학력 증빙 필수제출

기 간	학교명	학과명	전 공	학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경력**(※ 최근 경력부터 작성) *재직증명서 or 경력증명서 필수제출

기 간	직장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사항(※ 가능한 모든 자격사항)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자격증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비 고

○ 교육이수실적(※ 최근 2년간 교육이수내용 작성) *교육이수실적 필히 작성(증빙제출)

기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hour)	비 고
합계				

○ 컨설팅 경력(실적)(※ 최근 3개년 연도별로 작성) *증빙 필수 제출

컨설팅 기간	경영체정보		일수	계약금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상세정보	
	경영체명	연락처			컨설팅내용	(경영/기술)
합계						

경영체 현안 문제점	* 컨설팅 신청사유와 연계하여 경영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기술		
컨설팅 목표	* 역량강화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분야와 목표에 대해 자세히 기술		
컨설팅 분야	컨설팅분야		해당 경영체 (◎) 표시
	기반 조성	시설/운영개선	신규 참여희망 경영체 (개인·법인)
	경영 역량 강화	생산관리	
		질병관리	
	지속 성장	6차산업화	기 인증 경영체 (개인·법인)

사업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사업비	총 원 : 국고(원), 지방비(원), 자부담(원)
선정우선순위 해당 여부	* '우선선정기준('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참조
신청서 검토의견	※ 시·군 담당자 작성사항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시).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 지침에 기재된 신청서류 일체(법인, 개별 해당자료)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 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수행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사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며 제공하는 농자재 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서명)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농업경영체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농업경영체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농업경영체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소 속 :

컨설턴트명 :

(서명)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경영체명				
조합원수 (주주수)			조합원(주주) 중 농업인수	
소재지				
전화				
축종				
영농경력				
경영규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총 출자금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		자부담금
	부채	자기자본		전년 매출액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필수 작성

나. 경영체 경영현황

- 경영체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해당사항 자유기술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신청사유 : 해당사항 자유기술
- 해당경영체의 중점요구사항 : 해당사항 자유기술

2. 컨설팅 사업개요

가. 컨설팅 목적

○

나. 컨설팅 신청분야 :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 세부분야 : ① , ② , ③

다. 컨설팅 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 상기 컨설팅기간 산정근거 :

라. 컨설팅 사업비 : 금000원(W000,000,000)

- 자부담 확보여부 :

*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신청가능(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3. 기대효과

가. 컨설팅 수행목표 및 기대효과

컨설팅 세부분야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4. 사후관리계획

가.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 구체적으로 기술

-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수행계획서(요약)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소재지					전화(휴대전화)			
사회적기업/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업력		년	
주 사 업	재배작목 (업종)			부 대 사 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주 품목		①(), ②(), ③()						
경영규모		농지 : (전 : m ² , 답 : m ²)						
		시설 : (하우스 : m ² , 축사 : m ²)						
		공장 : (대지 : m ² , 건물 : m ²)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컨설팅신청분야 (◎)		기본조성	()	세 부 분 야	①			
		경영역량강화	()		②			
		지속성장	()		③			
컨설팅목적								
컨설팅 세부수행내용								
전년도 컨설팅 주요내용 (해당 경영체)								
사업기간		~ ()개월			소요금액	금000원(VAT 포함)		
중간보고 예정일자		YYMMDD			완료보고 예정일자	YYMMDD		
컨설팅업체					투입일수	총 일(M/D)		
투입전문인력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 경영체명 -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사업개요

1) 컨설팅 목적 :

2) 컨설팅 분야 :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 세부분야 : ① , ② , ③

※ 효과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해 법인·개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컨설팅 분야 선택을 권장함. 다만,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성장단계와 관계없이 희망분야 컨설팅 선택이 가능하며 컨설팅 분야는 3개이내로 설정할 것

3) 컨설팅기간 : '24. 00. 00 ~ '24. 00. 00 (00개월간)

※ 컨설팅분야 등을 고려하여 3~5개월 이내, 15회이상으로 설정하고 '24년 11월 29일 이전 완료 필수

※ 수행계획심사 승인 완료일 이후 컨설팅 시작일 반영 필수

○ 컨설팅기간 산정기준 :

※ 사업기간 산정기준 및 당위성을 명확히 기재

4) 사업비 : 금○○○원(W○○○원)

나. 컨설팅대상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귀농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경영체 ()
경영체명					
조합원 수 (주주 수)	조합원(주주) 중 농업인 수				
소재지					
전화					
축종					
영농경력					
경영규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총 출자금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	자부담금		
	부채	자기자본	전년 매출액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필수 작성

다. 경영체의 경영현황 및 문제점

※ 법인경영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후 컨설팅 목표 및 주요내용에 해당사항 반영 필수

라. 컨설팅 주요내용

2. 컨설팅 목표 수준 및 핵심성과지표(KPI)

가. 경영개선방향 : 주요내용 기술

나.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항 목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 법인경영체는 인증획득 및 특허등록 등 구체적 목표 포함

다. 정성·정량적 성과지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기술)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비고
정량적 지표	인증획득			산출식 또는 증빙자료
	특허등록			
정성적 지표				

※ 정량적 지표 1개, 정성적 지표 1개 필수

3. 수행 절차 및 단계별 산출물

가. 컨설팅 수행단계 및 일정(※주별 혹은 일별 진행일정 작성)

일정	수행단계별 주요업무	투입컨설턴트	산출물
00월10일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턴트명	산출물 내역
00월20일			
:			
:			중간보고서 제출(○월 ○일)
00월00일			
:			
:			
00월00일			완료보고서 제출(○월 ○일)
:			

*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 제출일자는 필수 입력사항

* 컨설팅 수행단계별 세부 일정 및 컨설턴트 투입계획,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컨설팅 수행 방법론 및 툴 제시

* 해당 컨설팅업체의 주요 컨설팅 수행방법 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툴을 상세히 기술

4. 사후관리계획

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5. 컨설팅 비용 산출내역

가. 컨설팅업체명 :

나. 참여컨설턴트 인원수 : 총 명(내부 ○명, 외부 ○명)

다. 컨설턴트별 투입일수/단가 산정

분 야	세부전공	소 속	컨설턴트	내부/외부	투입일수	수임단가	연락처
기술/ 수도자	농업환경	00컨설팅	홍길동	내부	00M/D	40만원 (승인 시 수임단가)	휴대전화
경영/ 회계	재무	XX연구소	이도령	외부	00M/D	50만원	
:		:	:	:	:	:	
합계			00명		합계 00M/D	금액합계	

※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 단가 산정 시, 농정원 평가점검단에서 승인한 수임단가를 기준으로 M/D를 반영한 금액 산출

※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6.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업체 소개

* 컨설팅 추진실적, 우수사례 및 전문분야별 보유컨설턴트 현황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컨설팅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컨설팅 기간			
	①	②	③				
컨설팅금액	원		총 투입 M/D				
평가일	20 . . .		평가위원	(서명)			

항 목	평 가 항 목	A	B	C	D	E	평점
목적 및 과제이해 (30)	지원 경영체의 컨설팅 니즈와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컨설팅 방향, 목표는 수신사유 및 경영체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	10	8	6	4	2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수행방안 (40)	지원 경영체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5	4	3	2	1	
	컨설팅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이 적절하고 전문성이 있는가?	적(10)		부(0)			
	컨설팅 수행단계별 세부 진행일정(현장방문일자, 중간보고서 제출일자 등)은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가?	5	4	3	2	1	
	수행내용에 적합한 투입인력과 산출물이 제시되었는가?	5	4	3	2	1	
	컨설팅 성과측정을 위한 KPI의 현재 상태와 컨설팅 완료 후 목표치는 적절한가?	적(10)		부(0)			
	KPI 측정 산출식은 수행 범위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5	4	3	2	1	
사업인력 .예산 관리방안 (15)	투입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인원은 적절한가?	적(5)		부(0)			
	컨설팅 추진체계 및 참여인원별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적(5)		부(0)			
	수행범위와 계약금액에 따른 투입인력별 비용 산정이 적절한가?	5	4	3	2	1	
사업완료 및 기대효과 (15)	컨설팅 수행 기대효과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5	4	3	2	1	
	컨설팅 사업 후 결과물 활용방안 등이 적절한가?	5	4	3	2	1	
	컨설팅 완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활동계획이 수립되었는가?	5	4	3	2	1	
합계(100점)							
총평 및 특기사항	※ 60점 이상은 승인, 수정.보완은 1회 기회 부여 ※ 총점 60점 미만 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나 '적부' 심사항목 중 1개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 미승인 * 수행계획서 심사 결과 미승인인 경우 수정 및 보완 ※ 수행계획서 평가항목은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심사결과	승인()			미승인()			

[별지 제7호서식]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계약서(예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계약서(예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용역 의뢰자 00000000(농업경영체명) (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임자 00000000(동물복지축산 컨설팅업체명) (이하 “을”이라 칭함)는 정부가 시행하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 년 00월 00일부터 20 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본 용역 계약금액은 금_____원(W00,000,000 / VAT포함)으로 한다.
계약금액의 입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을 통한다.

제3조(컨설팅 용역의 내용 등)

“을”이 “갑”의 사업에 관하여 제공할 컨설팅 항목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항목	컨설팅 세부항목
	①
	②
	③

제4조(기대효과) 컨설팅 용역의 기대효과는 “갑”과 “을”이 계약 체결 시 쌍방합의하에 계량화 할 수 있는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한다.

1. 컨설팅 수행결과 목표치 및 기대효과

항 목	경 영 개 선 목 표	기 대 효 과

2. 정성·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항목	컨설팅 전 현황	컨설팅 후 목표	달성 판단 기준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제5조 (컨설팅 수행방법 및 참여인력) 이 용역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도 및 자문의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방문 : “을”은 수행계획서에 정한 기간에 따라 “갑”의 업체를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과제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2. 수시방문 : “을”은 “갑”의 요청 시 부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고 요청 내용에 따라 전화 및 e-mail, 화상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원격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원격컨설팅은 컨설팅 일수 당 최대 2시간, 전체 컨설팅 수행 시간 중에서 10% 이내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지도·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의 참여컨설턴트는 000, 000 내부 인력과 000, 000 외부 인력으로 한다.

제6조(컨설팅 결과의 보고) “을”은 매 방문 시 또는 수시로 컨설팅 세부내용을 수행일지로 작성하여 지도, 자문결과를 농업경영체에 통보하고, “갑”은 이를 확인 후 “을”에게 소견을 제시한다.

제7조(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컨설팅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갑”은 자부담금을 컨설팅 계약과 함께 “을”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 “을”은 계약서와 자부담입금확인서를 사업시행자(시·군·구)에 제출하여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을 체결한다.
 3. “을”은 자부담금을 모두 납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와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시·군·구)는 컨설팅 진행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갑”에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다. 단, “갑”의 위임 하에 사업시행자(시·군·구)가 “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가. “을”은 계약기간 1/3 이상 경과 후 중간보고서와 함께 중도금을 신청하며, 사업시행자(시·군·구)가 3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갑”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의 위임 하에 사업시행자(시·군·구)가 “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나. “을”은 컨설팅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개별경영체의 경우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인 경우 10일 이내, 법인의 경우 완료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완료’ 후 사후혁신역량진단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을”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아래에 명기된 사유에 한하여 중간보고 전에 계약내용을 1회 변경할 수 있다.

1. 컨설팅 내용, 기간,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2. 계약에 정해진 참여 컨설팅 인력과 컨설팅 비용의 변경
 3. 기타 컨설팅관련 주요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단,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에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② 제①항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을”은 변경된 수행계획서와 변경사유서(쌍방날인서명)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시·군·구)에게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유지 충실의 의무)

- ① “갑”과 “을”은 제8조 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시·군·구)는 협약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 1.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행정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2.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사업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권고에 대한 의무)

- ① “을”이 동물복지축산 컨설팅을 진행하는 동안 “갑”에게 내리는 권고내용은 “갑”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보편 타당한 내용이어야 하며, “갑”은 “을”의 권고를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
- ② “갑”은 “을”의 지도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불이행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통지를 불이행하여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이 없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부지원 결정의 취소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용역수행에 있어 계약사항 및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2. “을”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 본 용역사업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을”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 4. “을”이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하였을 때
-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여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이 본 컨설팅계약 및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2. “갑”의 태만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완료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 “갑”이 본 컨설팅 계약의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 ③ 계약 해지로 인한 컨설팅 용역사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을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사업주관기관에 의한 미승인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④ “갑”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한 경우,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 및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⑤ “을”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 상당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결과의 귀속) 이 용역사업 완료후의 기술지도 및 자문결과는 “갑”과 “을” 공동소유로 한다.

제14조(비밀의 보장)

-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갑”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받은 산출물을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공개할 수 있으며, 산출물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갑”과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 ③ “을”은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5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 ① “을”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갑” 또는 “을”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 ① 본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관할 행정기관의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업무 담당자의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② 부득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정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발효일)

- ①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및 주무 행정기관의 정부지원 확정승인한(협약)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 효력 발생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농업경영체와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서가 사업주관처에 의해 승인(협약) 받지 못한 경우 이 계약의 당사자 간 효력은 상실한다.

제18조(당사자 합의의 원칙)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근면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지침의 적용)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시행지침의 제 조항은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20 년 00월 00일

의뢰자 (갑) : 000000000

주 소 : 00시 00군

대 표 : 0 0 0 (인)

수임자 (을) : 000000000

주 소 : 000 00000 000

대 표 : 0 0 0 (인)

※ 본 계약서는 '예시'임
붙임. 비용지급 권한 위임서(예시)

[붙임 1] 비용지급 권한 위임서(예시)

위 임 장

○ 보조금액 : 금 원(W00,000,000 원)

20 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일체(중
도금, 잔금)를 아래 피위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 피 위임자

컨설팅업체명 : 아무개 컨설팅업체
주 소 : 00도 00시 00로
대표자 (성 명) : 홍 길 동 (인)

○ 위임자

경 영 체 명 : 아무개법인(농장)
주 소 : 00도 00시 00로
대표자 (성 명) : 0 0 0 (인)

화성시장 귀중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비용지급 협약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농업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 시·군(이하 '갑'이라 한다)은 컨설팅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컨설팅 수행내용 기재) '을'은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컨설팅 비용의 지원 취소) 이미 지급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 경우 또는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컨설팅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급받은 금액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 지원 경영체'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지급액을 회수한다.

제4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중간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경영체명 (휴대폰)		소재지	
주 사 업	사 육 축 종	부 대 사 업	사 육 축 종
컨설팅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휴대폰)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① , ② , ③	컨설팅기간 (총투입일)	- (일)
컨설팅 금액	현재까지 투입일수		

2. 목표 대비 추진 실적

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3.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서 원문 첨부

※ [별지 제11호서식 중간점검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컨설팅 추진상황

컨설팅 목표	계	획	실	적	달성도 (%)

성과지표(KPI) 달성을 위한 활동	성과지표와 관련한 컨설팅활동 중심으로 기술
------------------------	-------------------------

수행항목별	계획	추진실적
<i>계획서상의 수행항목</i>	<i>수행항목에 따른 계획</i>	<i>그간의 구체적인 추진내역</i>

향후계획	향후 추진일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	---------------------

※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과정, 도표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20 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컨설팅주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팅 제목 또는 주제 제시
컨설팅기간	20 . 00. 00 ~ 20 . 00. 00(00개월)

○○(농업경영체명)는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업체명)을 통하여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동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업체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체명

대표자 : 계약서상의 담당자명 (인)

화성시장 귀중

2) 경영체 현황

항목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컨설팅 니즈에 해당하는 일반적 경영체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진단내용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의 진단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개선과제 도출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혁신 및 개선 이슈사안을 도출

5) 해결방안(혁신, 개선) 도출 과정

항목별	세부 내용
	※ 혁신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혁신 및 개선계획 포함)

항목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현장적용(혁신,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별지 제13호의2서식]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편집순서_1.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p>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의 완료보고서입니다.</p>	<p>위여백 2cm</p> <p>연도</p> <p>주 제 명</p> <p>농 업 경 영 체 명</p> <p>아래 여백 2cm</p>	<p>가로 21.0 cm 세로 29.7 cm</p> <p>20 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완료보고서</p> <p>(컨설팅주제)</p> <p>년 월 일</p> <p>농업경영체명 ○ ○ ○ ○ 컨설팅업체명 ○ ○ ○ ○</p> <p>00000장 귀하</p>
---	---	--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제 출 문

000000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컨설팅 주제 :

사 업 기 간 : 20 .00.00 ~ 20 .00.00(00개월)

경 영 체 명 : (대표자) (인)

컨설팅업체명 : (대표자) (인)

책임컨설턴트 : (인)

요 약 서	
개요	컨설팅 수행내역을 중심으로 기술
컨설팅 전후 비교	AS-IS와 TO-BE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 달성도 및 컨설팅 효과	핵심적인 컨설팅주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기술
기타 특이사항	컨설팅 진행 시 어려웠던 점 및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목 차

I. 사업개요

1. 이하 자유
- 2.
- 3.

II.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 목표

- 가. 이하 자유
- 나.
- 다.

2. 세부 추진내용

- 가. 이하 자유
- 나.

III.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 2.
- 3.

[편집순서_5. 본문]

I. 사업개요

- 1) 컨설팅 목적 :
- 2) 컨설팅 분야 :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
○ 세부분야 : ① , ② , ③
- 3) 컨설팅기간 : 20 . 00. 00 ~ 20 . 00. 00 (00개월간)
- 4) 사업비 : 금○○○원(W○○○원)

II.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1. 사업수행목표

가. 이하 자유

- ※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수행계획서의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 ※ AS-IS와 TO-BE를 표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제시
- ※ 수행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시, 변경 내용 및 사유를 필히 기재

2. 세부 추진내용

가. 이하 자유

- ※ 구체적인 컨설팅 추진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 ※ 개선과제에 따른 해결방법(활동사진 및 영상이 있을시 제시)
- ※ 수행과정상의 애로사항 기술

III. 성과 및 컨설팅효과

1. 이하 자유

- ※ 성과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과 기타 정부지원정책 연계 방안이 있을시 구체적으로 기술
- ※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도를 표로 작성하여 기술
- ※ 성과지표별 달성도에 대한 산출근거 및 데이터자료 제시
- ※ 성과지표 달성도 (예시)

NO	성과항목	컨설팅 전	목표	컨설팅 후	산출근거	비고
1						
2						
:						

[편집순서_6. 참여인력]

	컨설턴트명	담당업무	투입일(MD)	비 고

참
여
인
력

[별지 제14호서식]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완료점검 평가표

농업경영체명 (전화번호)		담당 시.군	
컨설팅업체명		책임컨설턴트 (전화번호)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투입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m/d)	
평가자(소속, 성명)		평가일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① 컨설팅 수행목표와 수행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료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② 당초 계획된 컨설턴트가 투입되었는가?	5	5	4	3	2	1
평점설명						
③ 컨설팅 수행일지는 적정하게 기록 되었는가 ?	5	5	4	3	2	1
평점설명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④ 수행계획서의 방법론과 수행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⑤ 진단분석 과정은 항목 중심의 객관적 사실성에 입각한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⑥ 실행방안은 혁신 및 개선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⑦ 해당 법인경영체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하였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⑧ 컨설팅 완료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평점설명						

평가지표	배점	평가결과				
		A	B	C	D	E
⑨ 수행계획서 대비 제시된 KPI가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되고 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⑩ 경영체의 회계장부(월별 근거서류 포함)가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10	10	8	6	4	2
평점설명						
합 계	100	()점				

지적사항 및 종합의견 등

지적사항	정상완료 () 보완 () 협약 취소 () 감액 ()
종합의견	
보완 및 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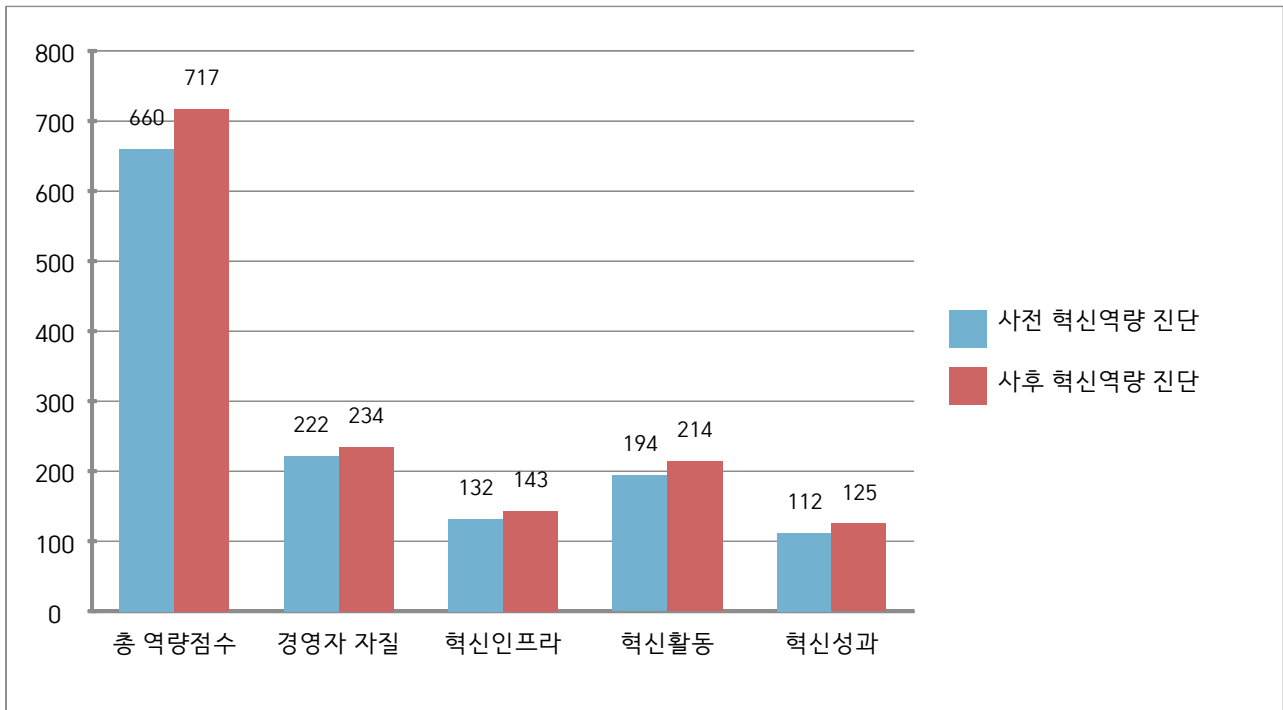
[별지 제15호서식] 개별경영체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 보고서

개별경영체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 보고서

경영체명						업력	년
소재지						전화(휴대전화)	
경영체 유형		①축종() ②사육형태() ③기타()					
주사업	사육축종			부대사업			
				사육축종			
주 품목		①(), ②(), ③()					
경영규모		토지 : (전 : m ² , 답 : m ²)					
		시설 : (하우스 : m ² , 축사 : m ²)					
		공장 : (대지 : m ² , 건물 : m ²)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건설팅신청분야 (◎)		기반조성	()	세부분야	①		
		경영역량강화	()		②		
		지속성장	()		③		
사업기간		~ ()개월		건설팅금액	금000원(VAT 포함)		
건설팅업체				투입일수	총 일(M/D)		
투입전문인력		성명	M/D	성명	M/D	성명	M/D
사전혁신역량 진단일		YYMMDD			사후 혁신역량진 단일		YYMMDD
구분	역량진단단계 (기초/전문/혁신)	역량진단 총점 (1,000점)	진단영역				
			경영자 자질 (300점)	혁신인프라 (200점)	혁신활동 (200점)	혁신성과 (200점)	
사전혁신 역량진단							
사후혁신 역량진단							
혁신역량 변화율	-						

구분	사전혁신역량진단	사후혁신역량진단
진단위원(성명)		
면담자		
진단영역별 근거자료 및 종합의견		
경영자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근거) ◦ (종합의견) 	
혁신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근거) ◦ (종합의견) 	
혁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근거) ◦ (종합의견) 	
혁신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근거) ◦ (종합의견) 	
총평 (진단결과)		

< 개별경영체 사전.사후 혁신역량 진단 결과(예시)>



[별지 제16호서식]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내용 (※ 당초 계약 및 협약서 상의 내용)	
변경 후 내용	

상기와 같이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 붙임 1. 수정 협약서 1부.
2. 수정 수행계획서 1부.

경영체명 : (인)

컨설팅업체명 : (인)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포기서

경영체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2 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

[인]

화성시장 귀하